

#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4. 23)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 제한 규정을 삭제·정비함(안 제9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참고, 기타”를 “참고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과”을 “별표와”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를 “술에 취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9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의 입장 및 관람 제한 규정을 삭제·정비함(안 제9조).

#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참고, 기타”를 “참고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과”을 “별표와”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를 “술에 취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교통나라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0~3세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	무료	·단체요금은 20명 시 적용한다.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10명 이상이라도 단체인솔일 경 우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한 다.
4~12세 어린이	500	400	
중학생·고등학생	1,000	600	
성 인	1,500	1,000	



현행	개정안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p> <p>제11조(세입) 교통나라 운영에 따른 관람료, 기타 수입금은 부천시 세입으로 한다.</p> <p>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1]</p> <p>교통나라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p>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그 밖에</u> -----</p> <p>제11조(세입) ----- ----- <u>그 밖의</u> ----- -----.</p> <p>제13조(규칙) ----- <u>필요한</u> ----- -----.</p> <p>[별표]</p> <p>교통나라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인</th> <th>단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0~3세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td> <td>무료</td> <td>무료</td> <td rowspan="4">·단체요금은 <u>20인</u>시 적용한다.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u>10인</u> 이상이라도 단체인솔일 경우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td> </tr> <tr> <td>4~12세 어린이</td> <td>500</td> <td>400</td> </tr> <tr> <td>중·고생</td> <td>1,000</td> <td>600</td> </tr> <tr> <td>성인</td> <td>1,500</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분	개인	단체	비고	0~3세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무료	무료	·단체요금은 <u>20인</u> 시 적용한다.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u>10인</u> 이상이라도 단체인솔일 경우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4~12세 어린이	500	400	중·고생	1,000	600	성인	1,500	1,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개인</th> <th>단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u>65세 이상</u> --</td> <td>---</td> <td>---</td> <td>----- <u>20명</u>시 -- -----.</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u>중학생·고등학생</u></td> <td>----</td> <td>---</td> <td>----- <u>10</u>명</td> </tr> <tr> <td>-----</td> <td>---</td> <td>---</td> <td>----- -- -</td> </tr> </tbody> </table>	구분	개인	단체	비고	----- <u>65세 이상</u> --	---	---	----- <u>20명</u> 시 -- -----.	-----	---	---	-----	<u>중학생·고등학생</u>	----	---	----- <u>10</u> 명	-----	---	---	----- -- -
구분	개인	단체	비고																																			
0~3세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무료	무료	·단체요금은 <u>20인</u> 시 적용한다.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u>10인</u> 이상이라도 단체인솔일 경우에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4~12세 어린이	500	400																																				
중·고생	1,000	600																																				
성인	1,500	1,000																																				
구분	개인	단체	비고																																			
----- <u>65세 이상</u> --	---	---	----- <u>20명</u> 시 -- -----.																																			
-----	---	---	-----																																			
<u>중학생·고등학생</u>	----	---	----- <u>10</u> 명																																			
-----	---	---	----- -- -																																			



## <관계 법령발췌서>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